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30 선고 2020나7608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30 선고 2020나76083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11 선고 2019가단33089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고, 항소인 C

변론종결 2021. 9. 2.

판결선고 2021. 9. 30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11. 선고 2019가단33089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,963,906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6. 22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“피고 C”을 “피고”로, “피고 B 주식회사”, “피고 회사”를 “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”로 각 고치고, 제1심판결 3면 14행의 “8호증”을 “9호증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(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)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당우증, 판사 최정인, 판사 김현석